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3. 1. 22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차 배출가스·연비 2중 측정·행정낭비
(‘13. 1. 22., 국민일보 09면)

1. 기사내용

- 환경부와 지경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가스 인증과 연비 측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
- 온실가스 제재 처벌 조항은 관련법 개정안 추진중이나 평균 연비 규제는 처벌 규정이 없음

2.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환경부는 인체 유해한 가스인 배출가스(NO_x , SO_x , 미세먼지 등)를 규제하기 위해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,
 - 지경부가 운영중인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는 자동차 연료 소비 절감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입 목적이 달라 중복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없음
- * 법적근거 : 배출가스 인증 업무(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),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7조)
- 측정방식도 도입 취지에 맞게 양 제도는 차별화 되어 있음
 - 환경부의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경유차량은 유럽식 모드, 휘발유 차량은 미국식 도심모드로 측정하는 등 유종별로 다르고 인체 유해한 질소산화물(NO_x), SO_x , 미세먼지 등을 측정

- 지경부의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는 연료 소비 절감 및 소비자의 체감연비에 가깝도록 차량의 5가지 실주행 여건*을 반영한 측정 방식을 유종에 상관없이 미국식 모드(도심, 고속도로, 복합)로 적용하고, 탄소(C)함량값을 통해 연료소비량을 측정

* ①시내, ②고속도로, ③고속 및 급가속, ④에어컨 가동, ⑤외부저온조건 주행

-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, 평균 온실가스 위반 업체 제재는 대기환경보전법, 평균연비 위반 업체 제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현재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나성화 과장(02-2110-3935)

오재철 사무관(02-2110-3936)